#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

### 2012년도 제12차 회의

1. 일 자 2012년 6월 21일(목)

2.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

3. 출석위원 임 승 태 위 원 (의장직무대행)

박 원 식 위 원 (부총재)

하성근 위원

정해방 위원

정 순 원 위 원

문 우 식 위 원

4. 결석위원 김 중 수 의 장(총재)

김 준 일 부총재보 강 준 오 부총재보

김 종 화 부총재보 최 운 규 경제연구원장

신 운 조사국장 성 병 희 거시건전성분석국장

김 민 호 통화정책국장 유 상 대 국제국장

김 윤 철 금융통회위원회실장 이 명 종 공보실장

서 영 경 금융시장부장 성 상 경 의사관리팀장

6. 회의경과

가. 의결안건

#### <의안 제23호 — 2012년 3/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>

(1) 의장직무대행이「한국은행법」제28조 및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제9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23호 — 「2012년 3/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」을 상정하였음

#### (2) 위원 토의내용

일부 위원은 최근 부도업체수가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으나,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제조업 자금사정BSI도 하락하는 등 중소기업 자금사정 지표가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, 국내은행의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도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완화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2012년 3/4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는 전분기와 같은 7조 5,000억원으로 설정하되, 해외 위험요인 및 이에 따른 국내 금융·경제여건, 중소기업 자금조달 상황의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

다른 일부 위원은 당행이 2011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총액대출한도를 7.5 조원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데, 최근의 대외충격과 내수불황 등의 경제여건 속에서 당행이 동 한도를 계속 동일 수준으로 설정한다면 시장에 어떤 의미를 줄 것으로 보는지 물었으며.

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과거 외환위기 9·11사태 리먼사태 등과 같은 대형 위기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경색을 일으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행이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나 금리를 바꾼 사례가 거의 없으며, 따라서 동 한도나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시장은 통화정책에 대해 특별한 시그널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답변하였음

또한, 동 위원은 당행이 그동안 지역본부별 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해오고 있는 가운데, 최근에는 업체당 지원한도를 확대하여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였는 바, 동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평가해 보았는지 물었으며,

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지역본부별 한도 운용방식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업체당 지원한도를 확대하였지만, 그 시기가 아직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측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한 후, 추후 금융기관 검사시 구체적인 자료(micro data)를 요구하거나 업체에 대해 직접 설문조사(survey)를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점검해볼 예정이라고 첨언하였음

또 다른 일부 위원은 그동안 총액한도대출의 실제 집행금액이 한도 설정액에 매우 근접한 상태로 유지되어 왔는데, 대외적인 충격 등에 대비하기 위해동 한도를 여유있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으며.

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대외적으로 큰 충격이 와서 통화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기준금리와 마찬가지로 총액한도대출도 임시 금통위 개최 등을 통해 즉각 조정할 수 있으며, 외부 충격에 대비하여 여유 한도를 두는 것은 시장에서 통화당국의 정책기조가 변화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가 있다고 답변하였음

## (3) 심의결과

의결문 작성·가결

## 의결사항

2012년 3/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7조 5,000억원으로 정한다.